

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7. 24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7.15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19.7.16.

다. 상정일자: 제232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(2019.7.24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일자리경제과장 추연호】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제2항 “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”는 규정에 따라 동일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두 개의 조례 중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」의 “사회적경제위원회”로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과 사회적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용어 정의 명확성 확보(안 제2조)
- 2)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별도 운영에 따른 비효율성 해소
(안 제3조)
- 3) 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
(안 제4조 ~ 제9조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조희옥)

○ 본 조례안은

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,

○ 검토의견으로는

- 안 제3조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」에서 규정한 “사회적경제위원회”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,
- 기타 개정안은 용어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없음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: 없음